

의안번호	2200001
의 퇴 인	서미화의원
회 답 일	2024.8.19.
추계번호	24B163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광역교통센터에 교통약자 이동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택시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운전원이 차량당 2.5명이 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892억원, 2030년 4,970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2조 4,647억원(연평균 4,929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국 비: 향후 5년 동안 1조 2,308억원(연평균 2,462억원) 이상

○ 지방비: 향후 5년 동안 1조 2,339억원(연평균 2,468억원) 이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광역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원회 운영(안 제12조제4항, A)		6.1	6.1	6.1	6.1	6.1	30	6.1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택시 지원(안 제32조제2항)	합계(B)	3,945	3,932	3,920	3,907	3,895	19,598	3,920
	국비	1,972	1,966	1,960	1,954	1,947	9,799	1,960
	지방비	1,972	1,966	1,960	1,954	1,947	9,799	1,960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예산 지원(안 제39조제2항)	합계(C)	941	971	1,003	1,035	1,069	5,019	1,004
	국비	471	486	501	517	534	2,509	502
	지방비	471	486	501	517	534	2,509	502
합계(A+B+C)		4,892	4,909	4,928	4,948	4,970	24,647	4,929
	국비	2,443	2,452	2,461	2,471	2,482	12,308	2,462
	지방비	2,449	2,458	2,467	2,477	2,488	12,339	2,468

주 1.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별로 추산한 결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된 금액을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 있음

2. 국비와 지방비는 5:5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함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의무규정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함 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제외한 광역교통시설	의무규정
2	안 제6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의원,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2항) 7.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도입 및 지역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점자안내판 설치, 문자 또는 수어 표시 지원, 이해하기 쉬운 표지 제공 등 교통 정보 접근에 관한 사항 9. 자율주행차량 등 미래 교통수단 이용 및 기술 활용한 교통 정보 접근 향상에 관한 사항 1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의무규정
4	안 제9조 (기초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기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시·군·구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구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전원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저상버스 도입 및 예외노선 관련 지방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초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1조 (국가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이동편의서비스 점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국가센터”라 한 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이용자 등록·차량 배차 위한 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 운영	
		2. 교통사업자, 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 등의 교통약자에 대 한 인식 증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 램 운영 및 관련 교육 자료 개발	
		3. 기존 교통 정보를 점자, 문자 또는 수어로 제공하거나 이 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4.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약 자가 탑승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인증 절차 운영	
		5.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와 교통 정보 체계 등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의무규정
		6.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실태 모니터링 및 이동권 증진 을 위한 관련 정책 연구·개발	
		7. 이동편의시설 및 이동편의서비스에 대한 민원 및 차별 사례 접수	
		8. 제12조에 따른 광역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9. 제13조에 따른 기초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관련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에 국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라 국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센터의 설치·운영 시 관계 전문가 및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가 센터에 교통약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그 밖에 국가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및 제4항에 따른 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함(제5항)	의무규정
6	안 제12조 (광역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 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 야 함(제1항)	의무규정
		1.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도입·운영 및 운전원 관리	
		2.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이용 등록·차량 배차	
		3. 버스, 도시철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3조 (기초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도 내 교통인프라 개선 4. 교통사업자 및 제27조의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점검 5. 기존 교통 정보를 점자, 문자 또는 수어로 제공하거나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 6. 휠체어 이용자의 공공 이동 지원 버스 운영 7. 제11조에 따른 국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제13조에 따른 기초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관련 사업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시·도지사는 광역센터의 설치·운영 시 교통약자, 관계 전문가 및 이동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역센터에 교통약자 관련 위원회를 관련 둘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그 밖에 광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7	안 제13조 (기초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기초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1.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도입·운영 및 운전원 관리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개선 계획 수립 3. 교통사업자 및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점검 4. 기존 교통 정보를 점자, 문자 또는 수어로 제공하거나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 5. 제11조에 따른 국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6. 제12조에 따른 광역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관련 사업	의무규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라 기초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센터의 설치·운영 시 지역 교통약자, 관계 전문가 및 이동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8조 (교통이용편의 서비스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자 및 시청각 정보와 읽기 쉬운 표지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9	안 제28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안 제36조 (항공의 이용 보장)	도로의 구조·시설 등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 도입을 유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3년 내 관련 도로를 개선하거나 우회노선 등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제8항)	의무규정
10	안 제32조 (택시의 이용 보장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이 경우 택시의 탑승에 적합한 휠체어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36조 (항공의 이용 보장)	「항공안전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비행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의 기내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좌석 식별 점자표지, 화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2	안 제37조 (해운의 이용 보장)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여객선 내에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통로 및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좌석 식별 점자표지, 화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38조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종류및운행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제1항) 1. 휠체어 이동지원차량: 보행에 심한 불편을 느끼며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2. 이동서비스 지원차량: 보행은 가능하나 시·청각 등의 정보 접근, 행동 문제 등으로 승하차 및 목적지 도착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행하는 차량 3. 단순이동 지원차량: 장거리 거동 불편 및 동반자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택시	의무규정
		시장·군수는 교통약자 특성에 맞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종류별로 운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수단 이동지원차량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제1항제1목 및 제2목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은 원활한 환승·연계를 위하여 이용자 등록·차량 배차를 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 함(제3항)	의무규정
14	안 제39조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예산지원등)	국가 또는 도(道)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확보 또는 운행할 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야 함. 단, 제38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및 이동서비스 지원차량은 차량별 일일운행률이 2/3 이상 되도록 자금을 지원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이동지원차량 이용 시 대기시간 등으로 차별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차량 한 대당 2.5명 이상의 운전원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5	안 제53조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2조	×	● (제3호) 택시, 광역교통시설을 교통수단, 여객시설에 추가함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여객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며, 법 제11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자는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대상시설별(택시, 광역교통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 관련 시설 설치물량과 단가를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곤란 사유에 해당					
2	안 제6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	● (미대상)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동권 실태 모니터링 및 조사 연구 사업이 이뤄지고 있음(24년 3억원)					
	안 제6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안 제11조 (국가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안 제18조 (교통이용편의 서비스의 제공)	×	● (제3호) : 교육 및 홍보사업, 국가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수립 및 운영 등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고, 교통이용 편의서비스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예산)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약자 현황, 교통수단·여객시설 등 이동편의시설 실태, 만족도 조사,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운영실태 등을 조사 <table><tr><td>단위: 백만원</td><td>2023</td><td>2024</td></tr><tr><td>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실태조사</td><td>239</td><td>300</td></tr></table>	단위: 백만원	2023	2024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실태조사	239
단위: 백만원	2023	2024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실태조사	239	300						
3	안 제7조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안 제9조 (기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	● (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기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도입 및 지역 간 연계에 관한 사항 등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이 계획에 반영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각 계획 수립 시 세부과제의 내용과 시행방법 등이 구체화될 때 소요비용을 추산할 수 있어 추계곤란 사유에 해당 ● 참고로 관련 계획 수립 주요 현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2021	300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	217
			하남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	160
			군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3	140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4	안 제12조 (광역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안 제13조 (기초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 (미대상) : 광역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시도가 운영중이며, 168개 시·군·구에서 기초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중(2024년 시도제출자료)이며,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위탁운영하고 있음 ● 2023년부터 특별이동차량 구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중		
			단위: 백만원	2023	2024
		특별교통수단	23,750	46,978	
		운영비지원(국비)			
		○	● (추계) : 광역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에 위원회 운영비용 추산		
		×	● (제3호) : 기초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에 설치되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추계 곤란		
5	안 제28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안 제36조 (항공의 이용 보장) 안 제37조 (해운의 이용 보장)	×	● (제3호)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를 개선하거나 우회노선 등 대안을 마련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운송사업자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통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해당 도로의 현황, 대안 및 설치대상 시설 등에 관한 정보가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안 제32조제2항 (택시의 이용 보장 등)	○	● (추계)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소요비용은 현행 운행중인 택시 차량의 대체차 교체 물량만큼 매년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7	안 제38조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종류 및 운행 등)	-	● (미대상)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러한 차량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있음 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은 현재 구축중으로 세부사업은 [참고자료]에서 확인		
8	안 제39조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예산 지원 등)	×	● (제3호) 휠체어 및 이동서비스 지원 차량별 일일운행률이 2/3 이상 되도록 자금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해당 차량의 일일운행률, 필요규모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 이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계가 곤란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	•(추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가 이동지원차량 한 대당 2.5명 이상의 운전원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비용은 현행 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중인 차량 대비 인원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산(제2항)
9	안 제49조 (개인형 이동수단 정비) 안 제53조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	•(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복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한 지표를 바탕으로 교통복지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사업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불확정적이어서 추계곤란 사유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현시점에 추계가 가능한 안 제12조제4항, 안 제32조제2항 및 안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정소요분을 추산함
 - 안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시 소요비용을 추산함
 - － 현행 승합차량으로 운영중인 택시는 개조를 통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하기에 비용, 기술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규 택시 구매 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제39조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지원차량은 차량 1대당 2.5명 이상의 운전원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이동지원센터의 운전원, 차량수를 바탕으로 최소 2.5명의 운전원을 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추산함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을 참고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광역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원회 운영(안 제12조제4항)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광역센터 설치·운영 시 교통약자, 관계 전문가 및 이동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센터에 교통약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17개 광역센터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회의비 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 24인, 분기별 5회 회의를 시행할 때 소요비용을 추산함
 - (위원수) 회의안건 심의비를 지급받는 민간위원 수는 국토교통부 내 위원회 민간위원 평균 24명으로 가정(2024년도 1분기 행정위원회 현황)
 - (회의개최수) 연간 회의일 수는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 연간 평균 회의실적 4.6회를 참고하여 5회로 가정
 - (안전심의비)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건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¹⁾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센터에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214쪽)

[표 2]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수(a, 개)	17	17	17	17	17	—
민간위원수(b, 명)	24	24	24	24	24	—
회의개최수(c, 회)	5	5	5	5	5	—
안전심의비(d, 백만원)	0.3	0.3	0.3	0.3	0.3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a \times b \times c \times d$, 백만원)	612	612	612	612	612	3,060

나.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택시 지원(안 제32조제2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²⁾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은 택시운송 면허를 받은 자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용 지원과 방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알 수 없어, 현재 운행중인 차량의 대폐차 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 추계대상 택시 중 매년 대폐차량은 통계 이용이 가능한 2014~2018년까지 5년 동안 전체 택시의 평균 10.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향후 대폐차량 물량은 전체 면허 대수의 10.7%를 적용함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표 3] 연도별 택시 대폐차 현황

(단위: 대)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율
일반택시	90,205	89,933	89,220	88,306	87,525	-0.75%
개인택시	164,702	164,617	164,434	164,328	164,729	0.004%
합계(a)	254,907	254,550	253,654	252,634	252,254	-0.26%
대폐차현황(b)	26,993	30,363	19,005	31,697	27,366	0.34%
비율(b/a)	10.6%	11.9%	7.5%	12.5%	10.8%	10.7% (5년간 평균)

자료: 전국택시운송사업협회

- 연도별 택시면허대수는 최근 5년간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동 추세를 바탕으로 전체 택시수를 추정하고 이 중 10.7%의 물량이 대폐차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택시면허대수

(단위: 대)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일반택시	86,294	85,336	84,385	83,355	83,178	-0.92%
개인택시	164,789	164,687	164,678	164,582	164,627	-0.02%
합계	251,083	250,023	249,063	247,937	247,805	-0.33%

자료: 전국택시운송사업협회

[표 5] 택시 대폐차물량 추정: 2026~2030년

(단위: 대)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일반택시	82,417	81,662	80,915	80,175	79,441	404,610
개인택시	164,587	164,546	164,506	164,465	164,425	822,529
합계(a)	247,003	246,209	245,421	244,640	243,865	1,227,138
대폐차 예상물량 (a×10.7%)	26,298	26,213	26,130	26,047	25,965	130,654

□ (지원단가) 현재 정부의 지원계획이 부재한 상황이고, 택시차량보다 휠체어 탑승 장치가 장착된 택시의 경우 구매비용이 일반 택시차량보다 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간의 차액수준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일반택시의 경우 2,500~3,500만원 수준³⁾, 휠체어 탑승장치 장착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5,000만원 수준으로 약 1,500~2,50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
- 본 추계에서는 이들 차이의 최소값 1,500만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국가 750만원, 지방비 750만원)
- 재원부담: 특수교통수단 보조사업 국비보조율 50% 적용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휠체어 탑승 택시 교체 시 차량구매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6] 휠체어 탑승 택시로 교체 시 차량구매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대)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휠체어 탑승 택시 구매 대수(a)		26,298	26,213	26,130	26,047	25,965	130,654
단가(b)		15	15	15	15	15	-
합계(A=a×b)		394,470	393,195	391,950	390,705	389,475	1,959,795
	국비(A×0.5)	197,235	196,598	195,975	195,353	194,738	979,898
	지방비(A×0.5)	197,235	196,598	195,975	195,353	194,738	979,898

다.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예산지원(안 제3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가 이동지원차량 이용 시 차량 한 대당 운전원이 2.5명 이상이 되도록 운전원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

3) A사 택시 2,480~3,600만원, B사 택시 3,5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각 차량회사 홈페이지 검색 기준), 전기택시는 정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격 고려 시 제외함
조달청 나라쇼핑몰에 등록된 장애인콜택시(카니발, 저상리프트형)의 경우 5,000만원

도록 하고 있어, 차량당 운전원 수를 2.5명까지 확보하기 위해 추가 운전원 고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 이동지원센터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동지원 차량대수별 운전원수는 평균 0.9명이며, 개정안이 규정한 2.5명까지 확보할 경우 12,860명의 운전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표 7]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운전원 수: 2024년 3월 기준

(단위 : 대, 명)

구분	이동지원센터 차량수	운전원수(A)	차량당 운전원수	차량당 2.5명 운전원(B)	필요인력(B-A)
서울특별시	729	802	0.9	1,823	1,021
부산광역시	211	211	1.0	528	317
대구광역시	199	177	1.1	498	321
인천광역시	255	256	1.0	638	382
광주광역시	127	133	1.0	318	185
대전광역시	391	126	3.1	978	852
울산광역시	90	109	0.8	225	116
세종시	35	34	1.0	88	54
경기도	1,253	1,485	0.8	3,133	1,648
강원도	241	297	0.8	603	306
충청북도	176	201	0.9	440	239
충청남도	220	242	0.9	550	308
전라북도	258	284	0.9	645	361
전라남도	218	287	0.8	545	258
경상북도	243	252	1.0	608	356
경상남도	428	511	0.8	1,070	559
제주도	68	86	0.8	170	84
합계	5,142	5,493	0.9	12,860	7,367

자료: 전국 시도 제출자료(2024.3월 기준)

- 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수는 매년 증감할 수 있으나, 현재 이 변화분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규 차량의 경우 차량 1대당 운전원 2.5대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현시점에 차량 1대당 운전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필요한 운전원(7,36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산하도록 함
 - 센터별 운전원 충원은 추계기간 균분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가정함
 - 센터당 운전원 1인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는 각 시도가 제출한 평균단가 4,800만원으로 가정하며,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함
 - 운전원 1인당 운영비(유류비, 정비비용)는 인건비의 24.7%⁴⁾를 적용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이용 시 차량 한 대당 2.5명 이상이 되도록 운전원을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643억 4,100만원, 2030년 1,863억 6,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8,760억 8,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이동센터 운전원 추가 충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운전원(a, 명)	1,473	1,473	1,473	1,473	1,473	7,367
인건비단가(b, 백만원)	51.2	52.9	54.6	56.3	58.1	—
운영비(c, 백만원)	12.7	13.1	13.5	13.9	14.4	—
합계[a×(b+c)]	94,119	97,136	100,272	103,480	106,878	501,884

4) 국토교통부의 전국 시도 이동지원센터 연간운영비 조사결과(2022년), 운전원 인건비의 평균 24.7%가 유지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4.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광역교통센터에 교통약자 이동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택시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운전원이 차량당 2.5명이 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892억 100만원, 2030년 4,969억 6,5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조 4,647억 3,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국 비: 향후 5년 동안 1조 2,308억 4,000만원 이상
- 지방비: 향후 5년 동안 1조 2,339억원 이상

[표 9] 이동센터 운전원 추가 충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광역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원회 운영(안 제12조제4항, A)			612	612	612	612	612	3,060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택시 지원(안 제32조제2항)	합계(B)		394,470	393,195	391,950	390,705	389,475	1,959,795
		국비	197,235	196,598	195,975	195,353	194,738	979,898
		지방비	197,235	196,598	195,975	195,353	194,738	979,898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예산 지원(안 제39조제2항)	합계(C)		94,119	97,136	100,272	103,480	106,878	501,884
		국비	47,059	48,568	50,136	51,740	53,439	250,942
		지방비	47,059	48,568	50,136	51,740	53,439	250,942
합계(A+B+C)			489,201	490,943	492,834	494,797	496,965	2,464,739
	국비		244,294	245,165	246,111	247,092	248,177	1,230,840
	지방비		244,906	245,777	246,723	247,704	248,789	1,233,900

주 1.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별로 추산한 결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된 금액을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별로 추산한 결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된 금액을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과장직무대리	분석관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그간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이용자 등록 서류·절차 등이 중복되고, 예약방법도 달라 광역권 이동이 불편
-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엘리베이터, 화장실, 출입구정보 등 이동편의시설 위치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없어 이용 불편

□ 시스템 구축방안

-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 시스템
 - 전국 어디서나 One-number(전화문자), 앱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자 등록, 예약 접수, 배차 등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 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이음) 등과 연계한 이용자 간편 심사·등록, 전국 통합 접수 및 AI배차 지원 서비스, 이용 통계관리 등 구축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

- 매년 교통약자 실태조사로 수집되는 이동편의시설 현황(위치 등),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실적 등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지자체·교통사업자 등이 이동편의시설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민간에 제공(예: Open-API)하여 다양한 민간서비스 창출* 유도
 - * 예: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시설 정보 제공, 경로 안내서비스 등 제공

□ 향후계획

- '24년 시스템 구축 및 '25년 시범운영·'26년 본격운영
 - * '24년 예산 시스템 구축비 3,487백만원